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2월 29일 09시 52분



목차

목차	2
장사시설허가 및 신고안내	3
장사시설(묘지, 화장/봉안시설, 자연장지 등)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	3
사설묘지 설치가능 지역	3
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	3

공설장사시설

사설장사시설

장사시설허가 및 신고안내

분묘개장광고

장사시설(묘지, 화장/봉안시설, 자연장지 등)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

1 장사시설 설치 가능여부 검토(노인장애인과)

2 개발행위허가 신청 : 도시계획과(토지이용팀)

3 장사시설 설치 허가신청(노인장애인과)

사설묘지 설치가능 지역

장사(☒☒)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외의 지역으로

☒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

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은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접도구역, 하천구역, 군사보호구역, 상수원보호구역, 문화재보호구역, 농업진흥지역, 채종림·보안림·국유림 및 사방지, 자연공원법에 의한 한려해상공원구역 등

- 「도로법」제2조의 도로,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제3조제2호의 철도의 선로, 「하천법」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
-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, 학교,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

Yeosu Web Contents

